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7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  
화계정 적립 확대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  
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및 사용 기준 완화(안 제5조)
-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6조)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, 심의위원회  
보고사항에 금융기관 예치현황 추가 및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 
관리 의무 추가 (안 제8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·예탁)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4. 4. 18. ~ 5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수정의결(2024. 5. 14.)

원 안	수정의결안
<p>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<u>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<u>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③ 구청장은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</li> <li>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</li> <li>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</li> </ol>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30”을 “1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0”을 “30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50”을 “70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설치하여”를 “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<u>30</u>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<u>200</u>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<u>50</u>을 초</p>	<p>제5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30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70</u> -----</p>

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  
-----  
-----.

제8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③ 구청장은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 사항 등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 : 재정관리국 예산정책과 장지원 (☎ 3153-8054)